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2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이소영・김성환・박지혜

염태영 • 이연희 • 임미애

복기왕 · 김성회 · 김태년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광고 규제의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일례로,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견됨.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녹색기업'지정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한편,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현행법상 녹색기업,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등이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작성·공개해야 하는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하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제16조의8, 제16조의10, 제16조의11등).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을 ""제품등의 환경성"이란 재료나 제품의 제조·소비·폐기 등 전 과정,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사업수행"으로 한다.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 제16조의2제1항 중 "제품"을 "제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자회사를 통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 제16조의8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사업활동 중에 소비하는 전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비중 제1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생산자, 판매자, 제공자 등의 사업자"로, "제품"을 "제품 등"으로 한다.

제16조의11제1항 및 제2항 중 "제품"을 각각 "제품 등"으로 한다.

제16조의14제1항 중 "제품"을 "제품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품의"를 "제품 등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품의 환경성"을 "제품 등의 환경성"으로 한다.

제34조제4호 중 "제품"을 "제품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제품"을 "제품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제 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편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	1
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	
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	
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	
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u>.</u>
가. 다음 물질 등(이하"환경	가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	
소·처리 기술과 소음・	
진동 방지 기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5. <u>"제품 등의 환경성"이란 재</u>

6. • 7. (생략)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저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 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 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 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표기 세급기 세고 고미 회
기 등 전 과정,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사업수행
· 6.·7. (현행과 같음)
세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u>স</u>
<u> </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
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
<u>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자회</u>
사를 통한 경우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으로 지

④ ~ ⑥ (생 략)

-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 개)①(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 1. ~ 4.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 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 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 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정할 수 없다.
$\underline{5} \sim \underline{7}$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
개)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활동 중에 소비하는 전
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조달하
<u>는 비중</u>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생산자, 판매자, 제공자 등의
사업자
- <u>제품 등</u>

- 1. ~ 4. (생 략)
- ② · ③ (생 략)
- 제16조의11(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제조업자등은 자 기가 한 표시·광고 중 <u>제품</u>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 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 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광고 중 제품의 환경 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 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 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 제16조의14(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u>제품</u>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 ·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광 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1(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u>제품 등</u>
2
<u>제품 등</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4(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① <u>제품 등</u>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u>제품</u>	제품 등의
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	
증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	①
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	
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	제품 등의
로 정하는 <u>제품의 환경성</u> 에 관	<u>환경성</u>
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	
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	
게 할 수 있다.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
 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자

4의2. ~ 6.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품 등</u>	
4의2. ~ 6.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1. • 2. (현행과 같음)	
3	
<u>제품 등</u>	
②·③ (현행과 같음)	